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60
----------	------

발의연월일 : 2023년 10월 27일

발의자 : 임희도 의원

1. 제안이유

범죄 현장에서 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덧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다.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0. ~ 10. 26.

○ 의견 내용 : 의견없음

바. 부서협의 결과(자치행정과) : 특이사항 없음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u> (생 략)	<u>제11조(포상)</u> 시장은 범죄피해자 <u>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u> <u>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하</u> <u>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u> <u>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 <u>제12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

하남시 포상 조례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를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을 세운 경우